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안 제24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박 병 섭)